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65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민형배 · 문정복 · 이개호
정준호 · 김문수 · 안도걸
양부남 · 최혁진 · 조계원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서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2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서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서 불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u>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성 인격장애</u>

	<u>인으로서 불특정의 사람에 대</u> <u>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u> <u>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u> <u>당하는 죄를 지은 자</u>
--	---